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231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다. 제출일자 : 2016. 5. 30.

라. 회부일자 : 2016. 5. 31.

II.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7.20)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아울러 위촉해지 사유를 명시함.
- 주민복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미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리위탁, 신탁 및 위탁에 관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함.
-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하기 곤란한 문장, 긴 문장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무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조건 및 위촉 해지 사유 신설(안 제6조)

- 1) 자격조건 : 해당분야 3년 이상 활동 경력 또는 강의 경력(제3항)
- 2) 위촉해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때, 질병·사고 등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때(제5항)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및 생략사항 조정(안 제5조)

-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일반재산의 신탁 및 위탁사항 신설(제2항제 7·8·9호)
- 2) 대장가격 5억원 이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생략(제3항제3호)
- 3)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폐지 사항 조정(제3항제4호)

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주민복리와 관계될 때 의견청취 신설(안 제11조)

라. 재산기부자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방법 신설(안 제15조제2항·제3항)

마.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17조제4항)

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 정비(안 제20조)

- 1) 관리위탁자 신설(제1항)
- 2) 재위탁 금지, 교육감의 관리·감독, 전대, 갱신(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3) 해지사유 : 목적달성 곤란 등(제8항)
- 4) 교육감이 관리위탁 재산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9항)

- 사. 처분 또는 활용계획 확정 등 대부계약 해지사유 정비(안 제23조제1항)
- 아.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1,000분의 10 적용 신설(안 제26조제5항제9호)
- 자. 외국인학교가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75퍼센트 감면(안 제28조)
- 차.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실효(실효일 : 2015. 1.16.)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교육감 소유가 아닌 건물이 교육감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을 경우 점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34조제1항제3호)
- 카. 신탁 및 위탁이 가능한 재산 종류 신설(안 제36조)
 - 1)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에 있어 건축대금의 충당이 필요한 재산
 - 2) 건물의 노후·협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재산
 - 3) 공용 목적 외에 수익시설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재산
 - 4) 활용할 계획이 없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재산
- 타. 재신탁 및 재위탁 금지, 교육감의 관리·감독 신설(안 제37조제2항·제3항)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안 붙임2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 붙임1)).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3.28 ~ 4.20.)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의안 별첨 1)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함(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의안 별첨 2)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 의안 별첨 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1231호로 제출되어 201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문별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인 바, 개정취지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문간 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먼저 현행 조례 제3조는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1) 및 「신에

1)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 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의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단일 조문내 상이한 내용의 조항이 병존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현행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각 규정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함으로써 입법체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공유재산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안 제5조)

○ 먼저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용도변경,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복합시설의 설치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이외에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및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를 비롯한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는 심의회는 기능 확대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3호는 심의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산 취득·처분의 대장가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교육지원청별 심의회가 폐지되고 본청 중심의 심의회로 단일화된 상황에서 심의회 생략 대장가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경우 심의 건수가 증가하여 심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6호부터 제29-2호까지는 5억원 이하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취득·처분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심의회 생략 대장가격을 5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교육장의 권한을 축소시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심의회 생략 대상인 공유재산의 대장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와의 통일적 체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안 제6조)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이²⁾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는바,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3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5항은 위원의 위촉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유재산 관련 심의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③ 위원의 제척·회피(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심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인 경우나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의 제척(제1항) 또는 회피(제2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빈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공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은³⁾ 재산관리관에게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은 재산관리관에게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태를 적기에 파악하여 무단사용, 무허가건물 축조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 제9조는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의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 바, 이러한 개정사항의 반영이 행정편의적 조치는 아닌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경우 연 1회의 조사만으로 불법적 행태 등을 적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의견청취 신설(안 제11조)

○ 동 개정조례안 제11조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개발행위로 인해 생태환경 파괴, 통행로 차단, 편의시설 훼손 등의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의⁴⁾ 행정예고처럼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

3) 「공유재산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의 수립·시행·변경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이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동 조 제11조제1항제4호가 의견청취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취득·처분’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칫 행정편의적 운영이 될 수도 있는 바, 동 규정이 악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적립 근거 마련(안 제12조)

- 현행 조례 제11조는 교육감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 제12조는 현행 조례 제11조를 보다 구체화하여 매각대금을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⁵⁾

이는 그동안 매각대금 활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는바, 기금조성 등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구체화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안번호: 1230)을 제출하였음.

다. 그 밖의 개정사항에 관한 검토의견

○ 우선 제명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현행과 같이 “교육감 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9조제2항은⁶⁾ 이와 달리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개정조문들이 약어사용 및 용어와 문장 등의 정비, 조문간 통합 조정에(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정사항의 반영(안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4조제1항제3호, 제36조) 및 중복규정의 삭제(현행 제9조, 제12조제1항, 제38조의2), 그 밖에 실효성 없는 규정의 삭제(현행 제25조 각호, 제28조 각호) 등을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 제4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문별로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중복하여 규정하여(현행

6) 「공유재산법」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생략)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4조제9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12조제3항, 제38조제7항) 조문간 입법체계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 제47조가 교육감에게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교육규칙 제정권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존에 각 조문별로 규정한 교육규칙 제정 관련 사항을 삭제한 것은 입법의 경제성 증대와 입법 체계의 혼선 방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허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

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2.4.>

제42조(일반재산의 신탁) ① 일반재산(토지와 그 정착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을 할 때에는 이 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2. 임대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3. 혼합형 신탁: 신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의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④ 제3항의 신탁의 종류에 따른 신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신탁: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 30년 이내

⑤ 제4항의 신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유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횡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

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